

『구미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』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이선우 의원 외 5명

2. 제안이유

- 구미시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·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시장의 책무 및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(안 제3조, 안 제4조)
- 청소년육성정책(안 제5조 ~ 안 제14조)
- 청소년육성위원회(안 제15조 ~ 안 제25조)
- 청소년지도위원(안 제30조 ~ 안 제34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청소년 기본법」,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불임)
- 기 타 : 조례안 예고(2021. 11. 12. ~ 11. 19.) 결과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「청소년 기본법」과 그 밖의 청소년 관계법령에 따라 구미시 청소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청년청소년과 신설과 함께 청소년 정책에 대한 기본적·통합적 조례의 마련으로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여 정책 수립 및 운영을 종합적으로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, 청소년 활동 지원과 청소년 복지 증진을 통하여 청소년 삶의 질 향상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